

## 파주시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-038호 「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참여자 모집 공고」와 연계하여 파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「파주시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6.

파 주 시 장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년 4월 ~ 12월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- 지원대상 : 파주시 소재의 단독주택 및 일부 공동주택 330가구<sup>1)</sup>

구 분	대상 주택 요건
단독주택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5의 [별표1]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
공동주택 <sup>2)</sup>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5의 [별표1]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력 계량기로 분리된 기존 주택으로, 각 세대가 구조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주택 ex)땅콩주택, 타운하우스

1) 위탁 수수료 등으로 인해 기존 347가구 → 330가구로 변경

2)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소유권 및 관리권 분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

- 지원내용 : 경기도 주택태양광과 연계하여 파주시 소재 주택에 태양광 설비(3kW) 설치비 일부 지원
- 지원금액 : 1가구 당 주택태양광(3kW) 설치비의 80%<sup>도40+시40</sup> 지원

## 2

##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파주시 소재의 단독주택 및 일부 공동주택
- 신청자격 : 기축 또는 신축주택 소유(예정)자

### < 주의사항 >

- 1) 주택용 태양광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'주택용'인 경우에 한함
- 2)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'단독주택' 혹은 '공동주택'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
- 3)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**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** 신청하여야 하며, **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** (단, 공동지분자 전원 [양식5]설치동의서 제출)
- 4) 신축주택의 경우 **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**(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- 5) 주택태양광(3kW) 설비 설치 보조금은 **자가소비용에 한하여 지원**
- 6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7)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경기도 RE100 소득마을 등 정부,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(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)인 주택은 **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**  
 ※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의거

## 3

## 지원기준

- 설치 상한액 : 4,541천원 ※ 상한액 초과 설비는 사업 승인 불가
- 지원기준 :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시비 1,816천원 지원

태양광 설비용량	총 사업비 (설치비)	최대 지원금(상한액)		자부담
		도비	파주시(시비)	
3KW	4,541천원	1,816천원	<b>1,816천원</b>	909천원

### < 주의사항 >

- 1) 설비용량의 110%(3.3kW)까지 설치 가능하며 **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**
- 2) 태양광 결정질 모듈을 설치할 경우 정격효율 17.5% 이상 인증제품 설치
- 3) 저탄소모듈(「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(산업부고시)」에 의해 탄소배출량 655kg·CO<sub>2</sub>-eq/kW 이하로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) 의무 사용
- 4) 태양광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)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을 통해 구매  
 - 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
- 5) 한국전력 상계거래를 희망할 경우 참여기업 혹은 한국전력(국번없이 123)으로 문의

## 4

## 추진절차(요약)

사업신청, 사업취소,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"[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\(ggre100home.or.kr\)](http://ggre100home.or.kr)" 누리집을 통해 진행

참여 시공기업 선정 및  
사전계약  
(신청자, 참여 시공기업)

- 신청자와 시공기업 간 계약 체결
- 사업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

사업 신청  
(신청자, 참여 시공기업)

-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

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 
(진흥원, 파주시)

- 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
- 자부담금 송금(신청자 → 참여 시공기업)

태양광 설비 설치  
(참여 시공기업)

- 사업 승인 후 설비공사 착수

설치확인 및  
설치확인서 발급  
(진흥원)

- 설치확인 신청(참여 시공기업)  
→ 현장확인 실시 → 적합 시 설치확인서 발급

보조금 지급동의  
(신청자)

- 설치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동의

보조금 지급  
(파주시 →  
참여 시공기업)

- (파주시) 시공업체 계좌로 보조금 지급  
※ 도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별도 지급

※ 사업 단계별 진행사항은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됨

## 5

## 추진절차(세부)

### 0 회원가입(신청자)

- 가입명의: 주택 소유주(공동소유의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) 명의로 회원가입
- 본인인증 방법

인증여부	구분	인증방법
인증	간편인증	카카오톡, 네이버, 금융기관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
	공동인증	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
무인증		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회원가입 가능 ※사업신청 시 [양식1~3]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수

### 1 사전계약 및 사업신청(신청자, 참여 시공기업)

- 신청방법: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구분	접수기간	비고
사전계약	2026.4.6.(월)~4.17.(금)	신청자-시공기업 간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업로드
사업신청	<b>2026.4.20.(월) 10:00</b> ~ 4.24(금) 18:00	시군별 선착순 접수 ※마감 시 신청 불가

- 제출서류

서류명	자료번호	비고
<b>필수 제출자료</b>		
사업신청서	-	시스템 신청 시 자동생성
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	-	2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※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제출
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	-	-
표준 설치 계약서	양식1	무인증 회원가입자 ※인증회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
사업 안내 확인서	양식2	
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양식3	
본인서명사실확인서	-	무인증 회원가입자 또는 주택 공동소유
<b>기타 첨부파일</b>		
설치동의서	양식4	주택 공동소유의 경우
토지사용승낙서	양식5	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

### < 주의사항 >

- 1) 사전계약 기간 및 신청접수 기간 등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2) 사전계약 기간에만 계약이 가능하고,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가능 ("신청대기")
- 3) 신청접수 기간에는 계약이 불가하며, 자가점검 완료 후 신청서 제출 ("신청완료")
- 4) 참여한 사업에 '사업승인'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,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
- 5) 사업취소, 포기 등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 모집 예정

## ② 자부담금 송금(신청자 → 참여 시공기업)

- 진흥원 및 파주시 서류검토 후 사업승인 시, 신청자는 시공기업에 자부담금을 송금

## ③ 태양광 설비 설치(참여 시공기업)

- 사업승인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설비공사 착수

## ④ 설치확인 신청(참여 시공기업)

- 신청절차: 주택태양광 설비 설치 완료 → 사용전점검확인증 발급  
(발급기관: 한국전기안전공사) → 설치확인 신청
- 신청방법: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기한: 사업승인 이후 90일(공휴일 포함) 이내
  - 기축 주택의 경우, 설치기간 연장 불가
  - 신축 주택의 경우,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  - 최종 설치기간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설치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,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주체: 태양광 설비 시공기업

○ 제출서류

서류명	자료번호	비 고
<b>필수 제출자료</b>		
인증서	-	-
하자보증서	-	하자보증이행증권
설계도면	-	-
공정사진	양식7	설치 전/중/후 사진 모두 첨부
사용전점검확인증	-	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
현장점검표 및 설치완료 확인서	양식8, 9	2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
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	양식10	-
보조금 지급 신청서	양식11	자부담금 이체확인증, 시공기업 통장사본,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, 4대보험) 포함
<b>기타 첨부파일</b>		
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	-	신축 주택의 경우
토지대장	-	태양광 설비를 토지에 설치한 경우

⑤ 보조금 지급동의(신청자)

- 설치확인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진흥원에서 ‘설치확인서’ 발급
- 신청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에 동의하여야 하며,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동의 시 보조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⑥ 보조금 지급(진흥원, 파주시 → 참여 시공기업)

- 시공기업 계좌로 보조금 지급

< 주의사항 >

- 1) 사업신청 및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본 공고-[붙임3]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
- 2) 공동주택(땅콩주택, 타운하우스 등), 미성년자 소유주, 공동명의, 법인소유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본 공고-[붙임2]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# □ 신청자 - 시공기업 공통 유의사항

- 공고 내용 미숙지, 제출 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및 파주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
- 신청자 및 참여 시공기업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
  - 신청자는 참여 시공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해야 하며, 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및 파주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
-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 할 수 있고,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- 경기도 및 파주시 보조금은 참여 시공기업에게 지급하며, 이를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에 동의 하여야 함
- 파주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르며 사업신청 / 설치확인 신청 시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공재정환수법),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 및 「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,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,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,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전·양도(건물용도 변경 포함)하거나, 폐기처분 할 때에는 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의

### 승인을 얻어야 함
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경기도 RE100 소득 마을 등 정부,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(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승인 등)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- 참여한 사업에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함

### □ 참여 시공기업 유의사항

-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및 「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」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, 건설산업기본법,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 준공 시 [붙임2-양식6]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명판을 규격에 맞게 제작·부착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 준공 후 신청자의 자부담금 이체 확인서를 포함하여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진흥원에서 주택태양광 자가소비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, 발전량 계측 원격장치(RTU) 설치에 협조해야 함(모니터링 플랫폼으로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까지 포함)
- 태양광 설비의 총 설치비는 공고상의 설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

- 단,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 난이도 증가(굴착, 콘크리트 타설량 증가 등)로 불가피하게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, 신청자-시공기업 간 충분한 사전협의 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
- 설치(현장)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3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은 시공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□ 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- (설치기한 연장) 사업승인 이후 60일 → 90일
  - 신축 주택의 경우,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
구분	기존(2025년)			변경(2026년)		
	최초	연장	합계	최초	연장	합계
기축	60일	30일	90일	90일	-	90일
신축	60일	60일	120일	90일	30일	120일

- (동일장소 중복지원 기준 완화)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한 ‘동일한 장소’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해석 완화
  - 고유번호가 동일하나, 건물ID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가능

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, 지원내용,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문의처
  -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재생에너지팀(☎031-996-4653, 4650)
  - 파주도시공사 에너지사업TF팀(☎031-950-1932)
  - 파주시 에너지과 RE100지원팀(☎031-940-8463)

- 붙임 1. (사업신청 시)신청자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안내자료 1부.  
 2. (양식)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제출서류 1부.

3. 경기도 주택태양광 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. 끝.